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4

발의연월일: 2024. 6. 27.

발 의 자:김예지·한지아·박덕흠

김대식 • 임종득 • 장동혁

백종헌 · 강대식 · 이달희

최수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생의 경우에는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현행법에 따라 학교의 장이일부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사를 하고 있음.

이처럼 학생의 건강검진만 영유아부터 시작되는 보건복지부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서 제외되어 있다 보니 해당 연령대의 검 진 자료가 소실되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검진 결과 활용도 역 시 저조하여 국민 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생의 건강검진 역시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학생들이 보다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7조의2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예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0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강검사"를 "건강검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건강검사를 한 검진기관은 교육부령"을 "건강검진을 한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이 조에서 "공단"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제7조의2제3항 중 "건강검사"를 "건강검사(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건강검사 등) ① (생 략)	제7조(건강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건강검사를 할 때에 질병의 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			
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u>강보험공단(이하 이 조에서</u>			
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공단"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			
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52조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			
의뢰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u>한다.</u>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③			
건강검사 외에 학생의 건강을	<u>건강검진</u>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생을				
별도로 검사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u>제1항과 제2항</u>	④ <u>체1항</u>			
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부				
득이한 사유로 관할 교육감 또				
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건강	검사를	연기]하거
나	건강검	범사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생략힡	날수 9	있다.		

- ⑤ 제2항에 따라 <u>건강검사를</u> 한 검진기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결과 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 다.
- ⑥ (생략)
-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강 검사의 시기, 방법, 검사항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제7조의2(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 의 수립·시행 등) ①·② (생략)
 - ③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 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u>건강검진을</u> 한 공단은 대통령령
⑥ (현행과 같음)⑦ <u>제1항</u>
제7조의2(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
의 수립·시행 등)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건강검사(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
④ (현행과 같음)